

『미래에셋증권 군인연금 안심통장』 특약

제정일 2019. 07. 01.

개정일 2021. 03. 25.

2021. 09. 24.

제 1 조 (약관의 적용)

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제공하는 “미래에셋증권 군인연금 안심통장 계좌(이하 “계좌”라 한다)”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종합계좌약관」, 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」, 「CMA서비스이용약관」과 군인연금법, 민사집행법 및 동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조 (가입대상)

이 계좌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으로 한다.

제 3 조 (입금제한)

- ① 이 계좌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입금하는 군인연금 급여로 입금자원이 제한되며, 군인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 할 수 없다.
- ② 이 계좌로의 입금은 군인연금법 제7조,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제3호(이하 “관련 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한다.
- ③ 매월 수령하는 군인연금 급여액이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.

제 4 조 (거래제한)

- ① 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관련 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대상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.
- ② 이 계좌에 대해서 회사는 상계하지 아니한다.
- ③ 이 계좌는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다.
- ④ 이 계좌는 대출계좌 및 근거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.

⑤ 이 계좌 내에서 유가증권 매매 및 각종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.

⑥ 이 계좌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·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·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 3 조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·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(군인연금 안심통장 CMA)로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예탁금이용료를 적용)

이 계좌는 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한다.

① 이 계좌의 예탁금이용료율은 적용일 현재 회사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예탁금 이용료율이 적용된다.

② 이 계좌의 예탁금이용료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예탁금이용료율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요율이 적용된다.

제 6 조 (수수료 면제)

이 계좌는 이체출금, 매체발급 등 자금이체업무 및 일반업무 처리와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한다. 단, OTP 발급 수수료는 고객서비스등급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.

제 7 조 (세제혜택)

이 계좌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제 8 조 (예금자보호)

이 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회사에 있는 고객의 모든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최고 5천만원”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.

〈부칙〉

이 특약은 2021년 9월 24일 부터 시행한다.

※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